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03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로는 [redacted]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였고, 원고는 2017. 5. 31. [redacted]로와 [redacted]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redacted]로의 채권 ·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이하 [redacted]로와 원고를 구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한편,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의 설립 목적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목적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redacted]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redacted]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2. 도시철도 건설,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도시철도법 제2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내지 7. 생략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나. 원고는 그 소유의 [redacted]구 A, B 지상에 위치한 실외골프연습장(취득일: 2009. 11. 15., 건물면적: 3,145.58㎡, 토지면적: 6,907.9㎡, 이하 해당 건물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및 C 지상에 위치한 별관 건축물(취득일: 2006. 10. 23., 건물면적: 24,105.17㎡, 토지면적: 10,706㎡, 이하 해당 건물을 '이 사건 별관건물'이라 하고, 해당 토지 및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위 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민간에 임대 내지 그 관리를 위탁하여 왔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운용 방식'이라 한다), 2014년도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2018년도까지의 구체적인 이 사건 부동산 운용 방식은 아래에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운용 형태	비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전체	임대차	-
이 사건 별관건물	지하매점	임대차	-
	체육문화시설	형식: 관리·운용 위탁 실질: 임대차[1]	-
	2층 D호	임대차	사무실로 활용
	2층 이벤트홀	관리·운용 위탁	토·일·공휴일 웨딩홀 등으로 활용
	3층 E호 ~ F호	임대차	치과병원으로 활용
	3층 G호 ~ H호	임대차	사무실로 활용

다. 원고는 위 각 과세연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감면받아 왔다.

라. 피고는 2019. 4. 16.부터 2019. 4. 22.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5.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고지하면서(이하 편의상 '당초 처분'이라 한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를 하였다.[3]

1) 체육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아래 이벤트홀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운영계약이 체결된 형태였으나, 그 계약 내용이 이벤트홀과 달리 원고가 매달 일정한 위탁료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실질을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임대 부분과의 차이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아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법령의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아 마지막 부과처분(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다른 관계 법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단위 :원)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이 사건 골프연습장	4,408,870	2,468,970	881,770	7,759,610
이 사건 별관건물	2,317,490	1,297,790	463,490	4,078,770
이 사건 토지	70,773,260	25,190,640	14,154,650	110,118,550
합계				**121,956,930**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2. [redacted]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는 2019. 10. 7. '이 사건 별관건물 2층 이벤트홀의 경우 임대차가 아닌 위탁운영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평일에는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하기에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나 나머지 이 사건 별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들이 이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직접 사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위 2층 이벤트홀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고, 2019. 12. 2.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내지 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4년도 부과처분 및 2015년도 내지 2018년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3) 한편, 피고는 2019. 7. 10. 및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역시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생략하도록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재산세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는 원고와 같은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4]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의 '직접 사용'이란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는 이상 소유자 스스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원고의 설립 근거가 된 관계 법령, 원고의 설립 취지, 원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 조례 및 원고의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운영 방식은 결국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비과세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는 2009. 11. 15.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redacted]특

4) 한편, 2020. 1. 15.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고유업무'가 '도시철도사업'으로 개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별시장의 지방세 감면 지원계획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고,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사업에 있어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이래로 약 10년간 계속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운용 방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조항이 정한 '직접 사용'이란 그 사용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체육문화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대상 요건은 충족될 수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운영 방식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5]하는 용어인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소유자이고, 만일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소유자는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을 뿐 그 자신이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 부동산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

5) 2013. 12. 31.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116곳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조세를 감면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자에게 임대된 부분 역시 여전히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 역시 '직접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언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 등의 내용(갑 제15호증 내지 19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이상으로 해당 임차인들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비과세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나) 먼저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redacted]특별시장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 과정에서 위 골프연습장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지방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아 관련 지원 계획을 마련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10년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redacted]시장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 과정에서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방세 감면 지원계획을 마련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후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피고가 추진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과세조치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별관건물에 대해서는 [redacted]특별시장 내지 피고의 구체적인 견해표명 사항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지원계획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아닌 [redacted]시장이 마련한 지원계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 위 지원계획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관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재산세를 항상 감면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1.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2014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은 지방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의 세액을 부과한 것이어서 이를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과세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3)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별지1]

목록

(단위 : 원)

과세연도	처분일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2014년	2019. 5. 14.	[redacted]구 A (건물-골프연습장)	4,408,870	2,468,970	881,770	7,759,610
		[redacted]구 C (건물-별관)	937,920	525,230	187,580	1,650,730
		[redacted]구 C 외 2건 (토지)	67,578,510	24,072,470	13,515,700	105,166,680
합계						**114,577,020**
2015년	2019. 12. 2.	[redacted]구 A (건물-골프연습장)	4,366,110	2,445,020	873,220	7,684,350
		[redacted]구 C (건물-별관)	912,810	511,170	182,560	1,606,540
		[redacted]구 C 외 2건 (토지)	68,511,490	24,399,020	13,702,290	106,612,800
합계						**115,903,690**
2016년	2019. 12. 2.	[redacted]구 A (건물-골프연습장)	4,275,540	2,394,300	855,100	7,524,940
		[redacted]구 C (건물-별관)	894,460	500,890	178,890	1,574,240
		[redacted]구 C 외 2건 (토지)	69,937,190	24,898,010	13,987,430	108,822,630
합계						**117,921,810**
2017년	2019. 12. 2.	[redacted]구 A (건물-골프연습장)	4,178,370	2,339,890	835,670	7,353,930
		[redacted]구 C (건물-별관)	3,282,460	1,838,180	656,490	5,777,1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redacted]구 C 외 2건 (토지)	81,466,170	28,933,150	16,293,230	126,692,550
합계						**139,823,610**
2018년	2019. 12. 2.	[redacted]구 A (건물-골프연습장)	4,132,720	2,314,320	826,540	7,273,580
		[redacted]구 C (건물-별관)	3,105,270	1,738,950	621,050	5,465,270
		[redacted]구 C 외 2건 (토지)	86,355,700	30,644,490	17,271,140	134,271,330
합계						**147,010,1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3. 제5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8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끝.